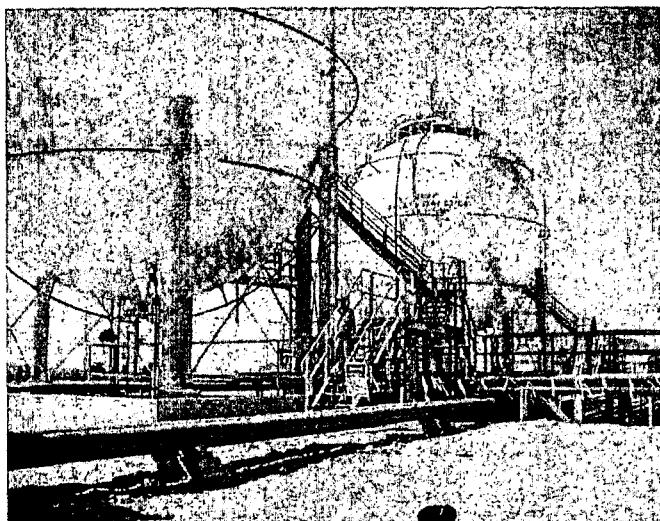


해외 및 국내 화학플랜트의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관한 소고

Spacing(Equipment/Tank) & Dike



2006. 4. 29

차순철기술사(주 저자), 차스텍이엔씨(주) 대표
황순용기술사(부 저자), 여수중방센터 팀장
조지훈기술사(부 저자), 공학박사/ 한국산업안전공단교육원 교수
장서일박사 (부 저자), 명지대학교 화공과

목 차

1. Introduction

2. 산업안전보건법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4. 위험물안전관리법

5. NFPA Code 30: Flammable & Combustible Liquids;
Dike Height & Tank Spacing

6. API Standard 2510: Dike Height & Tank Spacing

7. Fire Protection Regulation in Thailand:
Dike Height & Tank Spacing

8. Mexico Pemex Standard

9. Discussion

1. Introduction

1.1 개요

화학공장/위험물시설과 방호대상물 사이에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이격거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해외 법규, Code & Standard에 따라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 및 해외의 법규, Code & Standard를 요약하여 비교하고 정리하였다.

1.2 용어설명

1.2.1 안전거리

안전거리란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적, 물적 피해가 주위의 방호대상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성부분과 방호대상물(건축물 등) 사이에 소방안전 또는 환경 안전상 확보해야 할 수평거리를 말한다.

여기서, 확보해야 할 수평거리에 있어서는 위험물과 방호대상물 사이에는

- 상호 간에 다른 물건 등이 존치할 수 있으며,
-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 또한, 동일 구역 내에서는 안전거리가 배제된다.

1.2.2 보유공지

보유공지란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성부분의 주위에 확보해야 할 공지를 말한다. 이 보유공지는 연소방지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소화활동 상의 공지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어떤 물건도 놓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안전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규제개념인데 비하여 보유공자는 공간규제 개념으로서 안전거리보다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1.3 관련법규, Code & Standard에 따른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산업안전보건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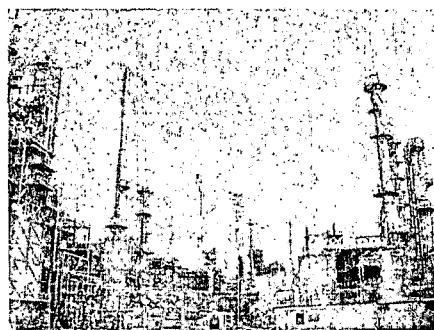
- NFPA Code 30
- API Standard 2510

- 태국 법규
- 멕시코 Pemex Standard

- World Bank
- IRI
- UL/FM

- IP-9

2. 산업안전보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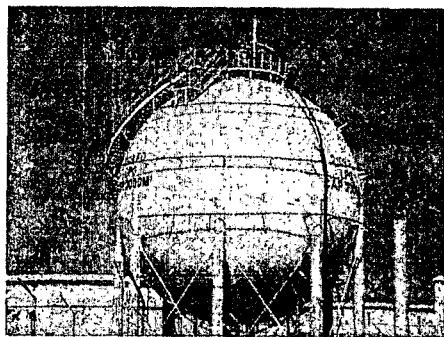
- 거리규정: 위험물 취급설비의 안전거리
- 관련법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 291 조 별표 3 의 2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구 分 | 안 전 거 리 |
|--|--|
|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 m 이상 |
| 2. 후레아스텍으로부터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 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후레아스텍으로부터 반경 20 m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 설치된 경우는 제외) |
|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20 m 이상 (단, 저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
| 4.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 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등의 외면으로부터 20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는 제외) |

*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 49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거리규정: 설비사이의 거리
- 관련법규: 시행규칙 별표 4.1-나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는 통로·공지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안에 설치할 것. 다만, 공정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고압가스설비로서 2개이상의 안전구역을 구분함에 따라 그 고압가스설비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분 | 설비사이의 거리 |
|--|--|
| 1) 안전구역 내의 고압가스설비(배관을 제외한다)와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가스설비와의 거리 | 고압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30m 이상 |
| 2) 제조설비에서 그 제조소의 경계까지거리 *제조설비와 인접한 제조소의 제조설비 사이의 거리가 40m 이상 유지되고, 그 거리안에 다른 제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 하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는 20m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특례기준) | 제조설비의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
| 3)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m ³ 이상인 압축기까지의 거리 |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0m 이상 |
| 4)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m ³ 또는 3톤이상의 것에 한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저장탱크와의 거리 |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 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1m 이상의 거리) |

- 거리규정: 안전거리
- 관련법규: 시행규칙 별표 4.1-가

규칙 별표 4-1-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일정거리를 더하여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다.

| 구 分 |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 제 1 종 보호시설 | |
|--------------------------------|----------------|---|---|
| | | 제 2 종 보호시설 | |
| (1) 산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1 만 이하 | 12m | 8m |
| | 1 만 초과 2 만 이하 | 14m | 9m |
| | 2 만 초과 3 만 이하 | 16m | 11m |
| | 3 만 초과 4 만 이하 | 18m | 13m |
| | 4 만 초과 | 20m | 14m |
| | 5 만 초과 99 만 이하 | 17m | 12m |
| (2) 독성가스 또는 개인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1 만 초과 2 만 이하 | 21m | 14m |
| | 2 만 초과 3 만 이하 | 24m | 16m |
| | 3 만 초과 4 만 이하 | 27m | 18m |
| | 4 만 초과 5 만 이하 | 30m | 20m |
| | 5 만 초과 99 만 이하 | 30m(가연성저온저장탱크는) $\frac{3}{25} \sqrt{X+100,000m}$ | 20m(가연성저온저장탱크는) $\frac{2}{25} \sqrt{X+100,000m}$ |
| | 99 만 초과 | 30m(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는 120m) | 20m(가연성저온저장탱크는 80m) |
| (3) 그 밖의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 1 만 이하 | 8m | 5m |
| | 1 만 초과 2 만 이하 | 9m | 7m |
| | 2 만 초과 3 만 이하 | 11m | 8m |
| | 3 만 초과 4 만 이하 | 13m | 9m |
| | 4 만 초과 | 14m | 10m |
| | 5 만 초과 99 만 이하 | 17m | 12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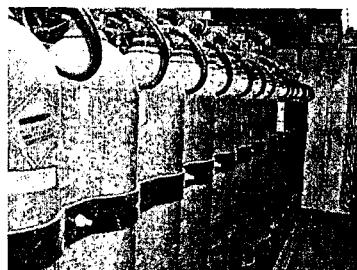
비고

- 위 표중 각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 는 1 일간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m^3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kg 으로 한다.
- 동일 사업소 안에 2 개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 5-1-가-(1)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경우에는 별표 4 제 1 호 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 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 거리규정: 안전거리

■ 관련법규: 법 제 5조제 4항 및 시행규칙 28조, 별표 4I, 별표 5I, 별표 6I 및 별표 7I

| 구분 | 안 전 거 리 | | |
|---|---|-----|--|
| 제조소 (제 6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 한다) | 위험물질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 | |
| 가 |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10m | |
| 나 |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 30m | |
| 다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 50m | |
| 라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1 일 30㎥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 2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20m | |
| 마 |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m | |
| 바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 5m | |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익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 아래 ※ 방화상 유익한 벽을 설치한 경우 참조 | | | |

| 구분 | 안전거리 |
|--|---|
| 제조소 (제 6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 한다) | <p>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 인화점이 100°C 이상인 제 4류 위험물을 100°C 미만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 제조소의 규정 중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준함.</p> <p>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지정수량 이상의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제조소의 규정 중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p> $D = \frac{51.1 \times N}{3}$ <p>D: 거리(m) N: 당해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p> |
| 저장소 옥내 저장소 | <p>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장소. 다만, 옥내탱크저장소를 제외 한다.</p> <p>→ 제조소의 규정에 준함.</p> <p>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거리 해당 없음.</p> <p>가. 제 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 수량이 저장수량의 20배 미만인 것</p> <p>나. 제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p> <p>다.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m²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p> |
| | <p>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 안전거리 해당 없음</p> |
| | <p>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 → 고인화점 위험물 제조소의 규정에 준함</p> <p>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옥내저장소 → 안전거리 해당 없음</p> |
| | <p>고인화점 위험물의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에 준함.</p> |

| 구분 | | 안전거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장소 | 옥내 저장소 | <p>고인화점 위험물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p> <p>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 배 이하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p> <p>→ 안전거리 해당 없음.</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p> <p>다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과산화물(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 수량이 10kg인 것), - 알킬알루미늄등, - 히드록실아민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th><th colspan="6">안전거리 (m)</th></tr> <tr> <th>주거용 건축물 등</th><th>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th><th colspan="4">지정분화재</th></tr> </thead> <tbody> <tr> <td>저성창고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td><td>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td><td>저성창고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td><td>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td><td>저성창고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td><td>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td></tr> <tr> <td>10 배 이하</td><td>20m 이상</td><td>40m 이상</td><td>30m 이상</td><td>50m 이상</td><td>50m 이상</td><td>60m 이상</td></tr> <tr> <td>10 배 초과 20 배 이하</td><td>22m 이상</td><td>45m 이상</td><td>33m 이상</td><td>55m 이상</td><td>54m 이상</td><td>65m 이상</td></tr> <tr> <td>20 배 초과 40 배 이하</td><td>24m 이상</td><td>50m 이상</td><td>36m 이상</td><td>60m 이상</td><td>58m 이상</td><td>70m 이상</td></tr> <tr> <td>40 배 초과 60 배 이하</td><td>27m 이상</td><td>55m 이상</td><td>39m 이상</td><td>65m 이상</td><td>62m 이상</td><td>75m 이상</td></tr> <tr> <td>60 배 초과 90 배 이하</td><td>32m 이상</td><td>65m 이상</td><td>45m 이상</td><td>75m 이상</td><td>70m 이상</td><td>85m 이상</td></tr> <tr> <td>90 배 초과 150 배 이하</td><td>37m 이상</td><td>75m 이상</td><td>51m 이상</td><td>85m 이상</td><td>79m 이상</td><td>95m 이상</td></tr> <tr> <td>150 배 초과 300 배 이하</td><td>42m 이상</td><td>85m 이상</td><td>57m 이상</td><td>95m 이상</td><td>87m 이상</td><td>105m 이상</td></tr> <tr> <td>300 배 초과</td><td>47m 이상</td><td>95m 이상</td><td>66m 이상</td><td>110m 이상</td><td>100m 이상</td><td>120m 이상</td></tr> </tbody> </table> | | | |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 안전거리 (m) | | | | | | 주거용 건축물 등 |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 지정분화재 | | | | 저성창고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 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 저성창고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 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 저성창고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 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 10 배 이하 | 20m 이상 | 40m 이상 | 30m 이상 | 50m 이상 | 50m 이상 | 60m 이상 | 10 배 초과 20 배 이하 | 22m 이상 | 45m 이상 | 33m 이상 | 55m 이상 | 54m 이상 | 65m 이상 | 20 배 초과 40 배 이하 | 24m 이상 | 50m 이상 | 36m 이상 | 60m 이상 | 58m 이상 | 70m 이상 | 40 배 초과 60 배 이하 | 27m 이상 | 55m 이상 | 39m 이상 | 65m 이상 | 62m 이상 | 75m 이상 | 60 배 초과 90 배 이하 | 32m 이상 | 65m 이상 | 45m 이상 | 75m 이상 | 70m 이상 | 85m 이상 | 90 배 초과 150 배 이하 | 37m 이상 | 75m 이상 | 51m 이상 | 85m 이상 | 79m 이상 | 95m 이상 | 150 배 초과 300 배 이하 | 42m 이상 | 85m 이상 | 57m 이상 | 95m 이상 | 87m 이상 | 105m 이상 | 300 배 초과 | 47m 이상 | 95m 이상 | 66m 이상 | 110m 이상 | 100m 이상 | 120m 이상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 안전거리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용 건축물 등 |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 지정분화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성창고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 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 저성창고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 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 저성창고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 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배 이하 | 20m 이상 | 40m 이상 | 30m 이상 | 50m 이상 | 50m 이상 | 60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배 초과 20 배 이하 | 22m 이상 | 45m 이상 | 33m 이상 | 55m 이상 | 54m 이상 | 65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배 초과 40 배 이하 | 24m 이상 | 50m 이상 | 36m 이상 | 60m 이상 | 58m 이상 | 70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배 초과 60 배 이하 | 27m 이상 | 55m 이상 | 39m 이상 | 65m 이상 | 62m 이상 | 75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배 초과 90 배 이하 | 32m 이상 | 65m 이상 | 45m 이상 | 75m 이상 | 70m 이상 | 85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배 초과 150 배 이하 | 37m 이상 | 75m 이상 | 51m 이상 | 85m 이상 | 79m 이상 | 95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배 초과 300 배 이하 | 42m 이상 | 85m 이상 | 57m 이상 | 95m 이상 | 87m 이상 | 105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배 초과 | 47m 이상 | 95m 이상 | 66m 이상 | 110m 이상 | 100m 이상 | 120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외탱크 저장소 | | <p>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p> <p>→ 제조소의 규정에 준함.</p> <p>*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의 사이</p> <p>→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p> <p>→ 제조소의 규정에 준함.</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안전거리 |
|-----|-------------|---|
| 저장소 | 옥내탱크 저장소 | <p>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p> <p>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 → 0.5m 이상</p> <p>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
| | 옥외저장소 | <p>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p> <p>가. 제 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p> <p>나. 제 4류 위험물 중 제 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 2석유류·제 3·석유류·제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p> <p>다. 제 6류 위험물</p> <p>라. 제 2류 위험물·제 4류 위험물 및 제 6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환경법」 제 15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p> <p>→ 제조소의 규정에 준함.</p> |

※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

(단위: m)

| 구분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시정수량의 배수) | 안전거리(이상) | | |
|--|--|---------------------------------|--------------------------------------|--------------------------------------|
| | | 주거용 건축물 | 학교·유치원 등 | 문화재 |
| 제조소·일반취급소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 수량의 3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5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5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10 배 미만 10 배 이상 | 6.5 7.0 | 20 22 | 35 38 |
| 옥내저장소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 수량의 12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5 배 미만 5 배 이상 10 배 미만 10 배 이상 20 배 미만 20 배 이상 50 배 미만 50 배 이상 200 배 미만 | 4.0 4.5 5.0 6.0 7.0 | 12.0 12.0 14.0 18.0 22.0 | 23.0 23.0 26.0 32.0 38.0 |
| 옥외탱크저장소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 수량의 60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0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500 배 미만 500 배 이상 1,000 배 미만 | 6.0 7.0 | 18.0 22.0 | 32.0 38.0 |
| 옥외저장소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 수량의 1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10 배 미만 10 배 이상 20 배 미만 | 6.0 8.5 | 18.0 25.0 | 32.0 44.0 |

■ 거리규정: 보유공지

■ 관련법규: 법 제 5 조제 4 항 및 시행규칙 28 조, 별표 4 I, 별표 5 I, 별표 6 I 및 별표 7 I

| 구분 | | 보유공지 | | | | | | | | | | | | | | | | | |
|---|--------------|---|---|-------------------------|----------------------|----------------------------|----------|-----------------------|-------|-----------------------|-----------------------|-------|-------|------------------------|-------|--------|----------------|--------|--------|
| 제조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 족물 그 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시설을 제 외한다) | | <table border="1"> <thead> <tr> <th>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th><th>공지의 너비</th></tr> </thead> <tbody> <tr> <td>지정수량의 10 배 이하</td><td>3m 이상</td></tr> <tr> <td>지정수량의 10 배 초과</td><td>5m 이상</td></tr> </tbody> </table> |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 배 초과 | 5m 이상 | | | | | | | | | | |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 | 3m 이상 |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의 10 배 초과 | 5m 이상 | | | | | | | | | | | | | | | | | | |
|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예외.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 → 3m 이상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예외. | | | | | | | | | | | | | | | | | | | |
| 저장소 | 옥내저장소 | <table border="1"> <thead> <tr> <th>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th><th>공지의 너비</th></tr> </thead> <tbody> <tr> <td>벽·기둥 및 바닥이 내 화구조로 된 건축물</td><td>그 밖의 건축물</td></tr> </tbody> </table>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벽·기둥 및 바닥이 내 화구조로 된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 | | | | | | | | | | |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 | | | | | | | | | | | | | | |
| 벽·기둥 및 바닥이 내 화구조로 된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body> <tr> <td>지정수량의 5 배 이하</td><td>-</td><td>0.5m 이상</td></tr> <tr> <td>지정수량의 5 배 초과 10 배 이하</td><td>1m 이상</td><td>1.5m 이상</td></tr> <tr> <td>지정수량의 10 배 초과 20 배 이하</td><td>2m 이상</td><td>3m 이상</td></tr> <tr> <td>지정수량의 20 배 초과 50 배 이하</td><td>3m 이상</td><td>5m 이상</td></tr> <tr> <td>지정수량의 50 배 초과 200 배 이하</td><td>5m 이상</td><td>10m 이상</td></tr> <tr> <td>지정수량의 200 배 초과</td><td>10m 이상</td><td>15m 이상</td></tr> </tbody> </table> | | 지정수량의 5 배 이하 | - | 0.5m 이상 | 지정수량의 5 배 초과 10 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지정수량의 10 배 초과 20 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지정수량의 20 배 초과 50 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지정수량의 50 배 초과 200 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지정수량의 200 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 지정수량의 5 배 이하 | - | 0.5m 이상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의 5 배 초과 10 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의 10 배 초과 20 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의 20 배 초과 50 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의 50 배 초과 200 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의 200 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의 20 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 소와의 사이 → 동표의 3 분의 1(당해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3m) | | | | | | | | | | | | | | | | | | | |
| | |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지정수량의 50 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차마높이가 6m 미만 인 것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th><th>공지의 너비</th></tr> </thead> <tbody> <tr> <td>지정수량의 5 배 이하</td><td>-</td></tr> <tr> <td>지정수량의 5 배 초과 20 배 이하</td><td>1m 이상</td></tr> <tr> <td>지정수량의 20 배 초과 50 배 이하</td><td>2m 이상</td></tr> </tbody> </table>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 배 이하 | - | 지정수량의 5 배 초과 20 배 이하 | 1m 이상 | 지정수량의 20 배 초과 50 배 이하 | 2m 이상 | | | | | | |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의 5 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의 5 배 초과 20 배 이하 | 1m 이상 | | | | | | | | | | | | | | | | | | |
| 지정수량의 20 배 초과 50 배 이하 | 2m 이상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보유공지 | | | | | | | | | | | | | | | | | | | | |
|---|---------|---|--|--|--------------------------|--------|--------------|---|----------------------|-----------------------|-----------------------|---------|---------|-----------------|---------|---------|------------------|---------|--------|----------|-------|-------|
| 저장소 | 옥내저장소 | <p>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p> <p>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p>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의 최대수량</th><th>공지의 너비</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해 건축물의 벽·기둥 및 바 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td><td>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td></tr> <tr> <td>20 배 이하</td><td>-</td><td>0.5m 이상</td></tr> <tr> <td>20 배 초과 50 배 이하</td><td>1m 이상</td><td>1.5m 이상</td></tr> <tr> <td>50 배 초과 200 배 이하</td><td>2m 이상</td><td>3m 이상</td></tr> <tr> <td>200 배 초과</td><td>3m 이상</td><td>5m 이상</td></tr> </tbody> </table>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의 최대수량 | | 공지의 너비 | 당해 건축물의 벽·기둥 및 바 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 | 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 20 배 이하 | - | 0.5m 이상 | 20 배 초과 50 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50 배 초과 200 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200 배 초과 | 3m 이상 | 5m 이상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의 최대수량 | | 공지의 너비 | | | | | | | | | | | | | | | | | | | | |
| 당해 건축물의 벽·기둥 및 바 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 | 원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20 배 이하 | - | 0.5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20 배 초과 50 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50 배 초과 200 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200 배 초과 | 3m 이상 | 5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p>고인화점 위험물의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p> <p>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에 준함.</p> | | | | | | | | | | | | | | | | | | | | |
| | | <p>고인화점 위험물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p> <p>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수량의 50 배 이하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중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p>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th><th>공지의 너비</th></tr> </thead> <tbody> <tr> <td>저장수량의 5 배 이하</td><td>-</td></tr> <tr> <td>저장수량의 5 배 초과 20 배 이하</td><td>1m 이상</td></tr> <tr> <td>저장수량의 20 배 초과 50 배 이하</td><td>2m 이상</td></tr> </tbody> </table>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저장수량의 5 배 이하 | - | 저장수량의 5 배 초과 20 배 이하 | 1m 이상 | 저장수량의 20 배 초과 50 배 이하 | 2m 이상 | | | | | | | | |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 | | | | | | | | | | | | | | | | | |
| 저장수량의 5 배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장수량의 5 배 초과 20 배 이하 | 1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저장수량의 20 배 초과 50 배 이하 | 2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p>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p> <p>다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과산화물(제 5 품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저장 수량이 10 kg인 것), - 알킬알루미늄등, -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 험물의 최대수량</th><th>공지의 너비</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 1 호에 단 또는 토체를 설치하는 경우</td><td>원쪽란에 정하는 경 우 외의 경우</td></tr> <tr> <td>5 배 이하</td><td>3.0m 이상</td><td>10m 이상</td></tr> <tr> <td>5 배 초과 10 배 이하</td><td>5.0m 이상</td><td>15m 이상</td></tr> <tr> <td>10 배 초과 20 배 이하</td><td>6.5m 이상</td><td>20m 이상</td></tr> </tbody> </table>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 험물의 최대수량 | | 공지의 너비 | 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 1 호에 단 또는 토체를 설치하는 경우 | | 원쪽란에 정하는 경 우 외의 경우 | 5 배 이하 | 3.0m 이상 | 10m 이상 | 5 배 초과 10 배 이하 | 5.0m 이상 | 15m 이상 | 10 배 초과 20 배 이하 | 6.5m 이상 | 20m 이상 | |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 험물의 최대수량 | | 공지의 너비 | | | | | | | | | | | | | | | | | | | | |
| 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 1 호에 단 또는 토체를 설치하는 경우 | | 원쪽란에 정하는 경 우 외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5 배 이하 | 3.0m 이상 | 10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5 배 초과 10 배 이하 | 5.0m 이상 | 15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10 배 초과 20 배 이하 | 6.5m 이상 | 20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보유공지 | | | | | | | |
|---|----------------------|---|----------|--------|--|--|--|--|--|
| 저장소 | 옥내저장소 | 20 배 초과 40 배 이하 | 8.0m 이상 | 25m 이상 | | | | | |
| | | 40 배 초과 60 배 이하 | 10.0m 이상 | 30m 이상 | | | | | |
| | | 60 배 초과 90 배 이하 | 11.5m 이상 | 35m 이상 | | | | | |
| | | 90 배 초과 150 배 이하 | 13.0m 이상 | 40m 이상 | | | | | |
| | | 150 배 초과 300 배 이하 | 15.0m 이상 | 45m 이상 | | | | | |
| | | 300 배 초과 | 16.5m 이상 | 50m 이상 | | | | | |
|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 | | | | | | | | | |
| →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3 분의 2 | | | | | | | | | |
| 옥외 탱크 저장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 | | |
| | | 지정수량의 500 배 이하 | 3m 이상 | | | | | | |
| | | 지정수량의 500 배 초과 1,000 배 이하 | 5m 이상 | | | | | | |
| | | 지정수량의 1,000 배 초과 2,000 배 이하 | 9m 이상 | | | | | | |
| | | 지정수량의 2,000 배 초과 3,000 배 이하 | 12m 이상 | | | | | | |
| | | 지정수량의 3,000 배 초과 4,000 배 이하 | 15m 이상 | | | | | | |
| | 지정수량의 4,000 배 초과 |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령 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 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 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 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
| * 제 6 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 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 유제안에 2 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 동표의 3 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 | | | | | | | | | |
| * 제 6 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 동표의 3 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1.5m 이상) → 동일구내에 2 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3 분의 1 이상의 너비 (최소 1.5m 이상) | | | | | | | | | |
| * 옥외저장탱크에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 → 동표의 2 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 이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화재사 1m 당 20 kW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펌프설비(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말하며, 당해 펌프 및 전동기를 위한 건 축을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작물을 포함한다.) → 3m 이상(다만, 방화상 유효한 적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 6 류 위험물 또는 지정 수량의 10 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경우 해당 없음.) | | | | | | | | | |

| 구분 | | 보유공지 | |
|-------|--------------|---|--|
| 저장소 | 옥외 탱크 저장소 |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 |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 지정수량의 2,000 배 이하 | 3m 이상 |
| | | 지정수량의 2,000 배 초과 4,000 배 이하 | 5m 이상 |
| | | 지정수량의 4,000 배 초과 | 넓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의 3 분의 1 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5m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펌프설비 | |
| | | → 1m 이상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 6류 위험물 또는 지정 수량의 10 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경우 해당 없음.) | |
| 옥내탱크 | | 보유공지 해당 없음. | |
| 저장소 | | | |
| 옥외저장소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 | 3m 이상 |
| | | 지정수량의 10 배 초과 20 배 이하 | 5m 이상 |
| | | 지정수량의 20 배 초과 50 배 이하 | 9m 이상 |
| | | 지정수량의 50 배 초과 200 배 이하 | 12m 이상 |
| | | 지정수량의 200 배 초과 | 15m 이상 |
| | | 다만, 제 4류 위험물 중 제 4석유류와 제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 |
| | | → 동표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 이상 | |
| 일반취급소 | | 제조소의 규정에 준함. | |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관련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1) 방유제의 용량: 동일 방유제 내에 설치된 탱크가
 - 1개 일 때: 탱크용량의 110% 이상
 - 2개 이상 일 때: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
- 2) 방유제 높이: 0.5 m 이상, 3 m 이하
- 3) 방유제 내의 면적: 8 만 m² 이하
- 4) 방유제 내 탱크의 수: 10개 이하
 -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만 ℓ 이하이고, 위험물의 인화점이 70°C~200°C인 경우에는 20개 이하
 - 위험물의 인화점이 200°C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음
- 5) 소방도로: 방유제 외면(1/2 이상)에 3 m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할 것
- 6) 탱크와 방유제 간의 거리:
 - 지름이 15 m 미만인 경우: 탱크 높이의 1/3 이상
 - 지름이 15 m 이상인 경우: 탱크 높이의 1/2 이상
 - 위험물의 인화점이 200°C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음
- 7) 찬막이 둑:
 - 용량 1000만 ℓ 이상인 경우: 높이 0.3 m 이상
 - 방유제내 용량 합계 2억 ℓ 이상인 경우: 높이 1m 이상
 - 방유제보다 0.2 m 이상 낮게 할 것
 - 용량: 간막이 둑내 탱크 용량의 10% 이상
- 8) 방유제 내 설치가능 설비:
 - 해당 탱크를 위한 배관(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
 -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 그 밖의 안전화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 9) 방유제에 계단 또는 경사로: 방유제 높이가 1 m 이상인 경우 50m마다 설치
- 10) 방유제 배수: 배수구 및 개폐식 밸브 설치 (용량 100만 ℓ 이상인 경우 개폐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장치 설치)

Discussion

- 1) 산업안전보건법: To be clarified basis??
- 2) 산업안전보건법: To be subdivided.
-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To be clarified basis??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To be simplified.
- 5) 위험물안전관리법: To be clarified basis??
- 6) 위험물안전관리법 To be simplified.
- 7)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Global Standard:
To be consistent with each other.
- 8)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1) 통일된 기준 필요
 - (2) 기본적인 것은 통일 필요
 - (3) 세부사항은 타 법 준용 필요
- 9) Further discussion: